

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**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**



2017. 3. 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7. 3. .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3월 3일 / 강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3월 6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17. 3. 20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상동 자치행정과장)

□ 제안이유

지역사회 및 구민화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(사업체 포함) 및 그 구성원을 발굴 시상하고, 수상후보자 추천인원 증원을 통해 후보자 선정에 객관성을 강화하여 강서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구민상 수상 대상을 강서구에 3년 이상 거주한 구민에서 구민이나 소재하고 있는 단체(사업체 포함) 또는 그 구성원으로 범위 확대(안 제1조, 2조, 3조)

나.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
(안 제7조)

다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7. 1. 18. ~ 2017. 2. 7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 : 강희순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구민화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단체(사업체 포함) 및 그 구성원을 발굴 시상하고, 수상후보자 추천인원 증원을 통해 후보자 선정에 객관성을 강화하여 강서구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

○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
가. 안 제2조에 구민상 수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강서구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단체(사업체 포함) 또는 그 구성원에게 까지 구민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

나. 안 제7조에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인원을 강서구민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

다. 안 제1조, 6조, 7조, 13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

○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

구민상 수상 대상을 확대하여 우리 구 소재 단체(사업체 포함) 또는 그 구성원이 지역공동체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,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 인원을 증원하여 구민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며,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다만 개정안 제3조제2항의 괄호 내용인 “개인 및 단체” 조항은 ‘개인 또는 단체’가 아닌 ‘개인과 단체 함께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, 개정안 제2조의 수상 대상 규정과 중복되므로 괄호 내용 삭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○ 수정내용 :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

※ 붙임 : 수정대비표 1부.

<붙임>

수 정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(생략) ② 시상인원은 강서구민대상 <u>1</u> 명(개인 및 단체), 강서구민상 <u>8</u> 명(개인 및 단체) 이내로 한다.	제3조(상의 종류 및 인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강서구민대상 <u>1</u> 명, 강서구민상 <u>8</u> 명 ----- -----.